

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 
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97호
- 나. 제출자 : 정재동 의원, 김용술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2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2. 6.

## 2. 제안이유

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·다양화 되는 재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, 화재·구조·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환경을 향상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적용범위(안 제2조)
- 다. 의용소방대 지원범위(안 제3조)
- 라. 의용소방대 지원절차(안 제5조)
- 마.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(안 제6조)
- 바. 의용소방대 지원 중단(안 제7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16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① 제정 배경

- 금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바, 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, 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·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·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음.
-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, 도시지역의 화재진압, 구조, 구급의 기본업무 외에도 산불진압, 자연재해 지원활동 등 소방지원업무가 증가하고 있어, 소방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임.
- 위와 같은 소방수요 증가로 인한 소방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소방활동이 필요한 바, 구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 및 현장 대응능력강화 등을 도모하여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취지로 보임.

### ② 주요 사항별 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, 지원범위 등을 정함.
-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안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는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함.

-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둬.
-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·감독과 지원중단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함.
- 안 제8조는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.

### ③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대사회의 소방 여건은 다양한 위험 요인의 증대로 전문 소방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,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소방력 향상을 위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 제정취지와 상위법을 고려할 때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의용소방대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된 조직이지만, 근본이 민간 조직인 특성상 친목단체로 전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타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 1부. 끝.

**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**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7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**제7조(임무)**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제16조(활동비 지원)**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**

[시행 2022. 12. 1.] [행정안전부령 제361호, 2022. 12. 1., 타법개정]

**제13조(임무)**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 8. 29.>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2023.1. 기준 17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

연번	자치구	조례 명칭	내용	제정일시
1	강남	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05.
2	강동	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05.
3	강북	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1.
4	강서	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2.
5	관악	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1.07.
6	광진	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0.
7	구로	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 (ii) 중복지원 제한 (iii) 표창	2022.11.
8	노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1.
9	도봉	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1.
10	동대문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2.

연번	자치구	조례 명칭	내용	제정일시
11	서초	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2.
12	영등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2.
13	용산	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0.
14	종로	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 (ii) 중복지원 제한 (i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v) 표창	2022.12.
15	중랑	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2.11.
16	동작	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신청절차 (ii)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(iii) 교부결정 취소 (iv) 실적보고 및 표창	2022.05.
17	중구	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	(i) 적용 및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(ii)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 (iii) 표창	2021.01.